

RISE 사업단 운영 규정

제정 2025. 05. 21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「충청남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사업」 (이하 “RISE 사업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사업추진 기본계획 및 수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
3.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
4.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
5. 사업 실적 및 성과 홍보에 관한 사항
6.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제3조 (조직)

- ① 사업단의 목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단장을 두며,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 직 4급 이상으로 보한다.
- ② 사업단에는 필요에 따라 부단장과 팀장을 둘 수 있으며, 사업 추진 및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일반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 (사업단장)

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총괄하며,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5조 (위원회 설치)

- ①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, 평가 및 감독을 위해 대학 RISE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, 성과관리위원회, 사업운영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 운영 지침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예산회계) RISE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한다.

제7조(보직수당) 사업단장과 부단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발령일로부터 월 단위로 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액은 직책의 책임정도를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성과급) ① 제3조, 제5조에 해당하는 조직 및 위원회의 구성원 중 RISE 사업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성과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, 연 1회 개인별 성과평가를 통해 매 학년도 말에 차등 지급한다.

제9조 (시행세칙)

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남 RISE사업 관련 법률, 법령, 규칙, 훈령 및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르
되,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0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